
이태원 사고 심리치료비 지원 안내문

2022. 11.



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
대전광역시자살예방센터

이태원 사고 심리치료비 지원 안내문

I. 추진 배경

○ 목적

-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정신건강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며,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및 꾸준한 치료 지원을 통한 대전시민의 정신건강문제 완화 및 심리적 안정 도모

※ 추진 경위

- 이태원 사고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사고임.
- 사고 현장에서 주변인들이 촬영한 사고 관련 내용이 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었고 사고 관련 내용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1577-0199를 통해 상담 접수되고 있음.
- 또한 관내 5명의 시민이 사상자로 포함되어 있고 유가족들이 호소하는 정신과적 문제가 상당히 위중한 것으로 판단됨.
-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 및 가족, 생존자, 간접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의 재난 심리지원 중요성이 높아짐.

II. 추진 개요

1

사업 개요

1.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

- (기관) 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사례관리(사후관리)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상자가 각 치료비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 가능
- (개별)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으나, 치료비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 가능

2. 지원기간: 2022. 11. 1. (화) ~ 2022. 11. 30. (수)

※ 단,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.

3. 지급방법

- 개별 납부방식(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광역센터에서 대상자에게 계좌이체)

※ 1인당 최대 금액(500,000원) 이상 발생 된 차액은 자부담

2

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

○ 치료비 지원 신청



대상자 및 보호자	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이태원 사고 심리치료비 지원 신청서작성
	② 치료비 선지급 후 진료확인서 등 필요서류 광역센터에 제출
	※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류는 지원 대상자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 센터를 내방하여 직접 제출함.
광역센터	① 내부 회의 및 결재 과정을 통해 치료비 지원 여부 결정 및 승인통보
	②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사업 및 지급방법 안내
	③ 치료 진행 사항, 잔액 점검 등

○ 지급 절차

※ 개별 납부방식

- (치료 대상자) ① 광역센터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등본) 및 개인 통장 사본 제출
② 치료비 선지급 후 광역센터에 지급 관련 서류 제출
- (광역센터) 제출 서류 확인 후 치료비를 개인에게 계좌이체 지급

3

치료비 지원 종결

- 치료비 지원 신청 대상자의 거부 또는 치료기관 미이용으로 종결
- 1인 치료비 지원 금액(500,000원) 소진 시 종결
- 심리치료비 지원 예산(5,000,000원) 소진 시 종결
- 심리치료비 지원 기간(2022. 11. 1 ~ 11. 30) 초과 시 종결

Ⅲ. 세부 내용

1

지원 대상

-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(학교, 직장 등의 사유로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학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)
- 이태원 사고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을 이용 중인 자
- 심리치료비 지원 기간 내 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자
(11월 1일~11월 30일 이내 진료받은 내용으로 12월 7일까지 접수된 내역에 한함.)

2

지원 내용

- 1인 최대 500,000원 이내(증빙자료로 확인된 금액만 지급)
-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정신건강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이용 시 발생된 모든 비용 지원
 - 약제비, 상담비, 심리검사비 등 지원 (소견서, 진단서 등 단순 서류 발급 비용은 제외)
- 지원기관
 - 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(사설 심리치료기관 제외)
- 지원제외 항목
 -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(예 : MRI 등)
 - ※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고 명시할 경우 지원 가능
 -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진단서 등의 서류 발급비
 - 간이 영수증(수기용)으로 발급받은 치료비
 - 카드 결제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
 -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등

구분	서식	서류	비고
공통 서류	서식1호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서	대상자(신청자) 작성
	서식2호	이태원 사고 심리치료비 지원 신청서	대상자(신청자) 작성
	-	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※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내 이태원 사고로 인한 치료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. ※ 심리검사 진행 시 소견서 필수	자부담
	-	본인확인을 위한 서류(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 등) ※ 주민등록 상 타 시·도 등록자인 경우 현재 대 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(재학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)	
	-	대상자(신청자) 통장 사본	
-	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※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※ 카드 결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		